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242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국선)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14. 14: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배송된 캠핑의자의 파우치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캠핑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라 한다)가 관리사무소의 공용 물품으로 배송된 것이라고 착오한 나머지 이와 함께 배송된 파우치(이하 '이 사건 파우치'라 한다)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임시로 분류해 두었을 뿐 이 사건 파우치에 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자는 캠핑용 간이의자이고 그것이 들어있던 종이상자에는 피해자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운송장이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종이상자를 개봉하여 위 의자와 함께 들어있던 이 사건 파우치를 방재실(이명, MDF실)로 가져다놓고 이틀 뒤 지하 2층 창고로 옮겨놓았다가 이를 다시 방재실로 가져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파우치 소유자 인식 가능성 정도

이 사건 의자의 배송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고, 수하인인 피해자는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아보던 사람이었으며, 배송 물품도 의자의 한 종류였으므로, 60대의 노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개인의 물품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파우치의 가치와 절취 동기 존부

이 사건 파우치는 이 사건 의자의 부속물로서 가치가 경미하므로(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파우치가 함께 배송되었던 것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찍이 사과하였더라면 사건화하고 싶지도 않을 생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정작 이 사건 의자는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파우치만을 가지려고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를 취거하면서 보인 행적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배송된 종이상자를 망설임 없이 개봉한 후 이 사건 의자를 꺼내어 벽면에 세워놓고 이 사건 파우치만을 옮겨놓는



과정에서 주변의 동정을 살피거나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등의 의심스러운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CCTV 카메라가 있어 사후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파우치를 은닉하려고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낮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를 보관한 장소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를 처음 가져다놓거나 옮겨놓은 방재실과 창고는 모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다른 공용 물품이나 폐기 대상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절취품 은닉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파우치를 임시로 분류해 두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 당시 보인 행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를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려주고 위 파우치의 소재를 물어본 상황과 이때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파우치 취거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시인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질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곧바로 자신의 취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이다.

물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피고인으로서 피해자가 이미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한 상황에서 자신의 취거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 이후에 실제로 방재실에서 이 사건 파우치를 꺼내어 왔고, 피해자도 이를 목격한 것은 분명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관리소장이 신고를 권유한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④ 경찰 작성 보고서(증거기록 10쪽)에도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또한 자신이 중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부르라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 모두의 기억에 다소간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경찰 작성 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 후 이 사건 파우치 취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명을 하면서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다는 절취의 고의와 피해자를 계속적·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 _____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368 절도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철량(기소), 전우석(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정12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파우치를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

 판사 김성수 _____

 판사 남근욱 _____